

# 전주대학교 대학헌장

(제정 2004. 8. 26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교육이념)**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“라 한다)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하여, 교시인 진리·평화·자유를 바탕으로,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통하여,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이념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적)** ①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·인성·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

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.
2.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
3.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.

③ 본교의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천하는 봉사인
2. 학습하는 교양인
3. 도전하는 전문인

④ 본교의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성인성 역량 (Spiritual · Christianity)
2. 의사소통 역량 (Universal · Communication)
3. 자기개발 역량 (Proactive · Challenge)
4. 창의융합 역량 (Exploratory · Creativity)
5. +형협력 역량 (Relational · Collaboration)

⑤ 본교의 전공능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(전공)별로 설정한다.

1. 전공분야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(Study · Potential)
2. 전공분야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(Training · Profound)
3. 전공분야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(Apply · Practical)
4. 전공분야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(Revolution · Professional)

[본조개정 2017.12.23.] [본조개정 2020.9.1.][본조개정 2021.4.30.]

## 제2장 교육과정

**제3조(교육의 기본방향)**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특성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구현
2. 사회의 변화와 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배양
3. 재학생, 학부모, 졸업생,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
- ② 교육과정의 특성화는 공동체적 인성 함양 및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을 지향한다.
- ③ 학생의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, 전공 교육과정,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[본조개정 2017.12.23.]

**제4조(교육과정 편성과 운영)**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실현, 학문적 수월성 추구, 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운영하며, 사회적 변화와 발전하는 학문의 성과를 반영하여 개선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② 최소전공학점, 복수(부)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 등 사회의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다전공 교육과정을 도입 및 운영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③ 교양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④ 전공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하되, 다음 각 호의 직무수준과 구성요소를 반영한다. <개정 2021.4.30.>

1. 직무수준: 전공기초, 전공심화, 현장실무, 직무전문 <개정 2021.4.30.>

2. 구성요소: 지식, 기술, 태도 <개정 2017.12.23.> <개정 2021.4.30.>

⑤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교재와 다양한 교육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강의하며,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. <개정 2021.4.30.>

⑥ 본교는 교내·외의 인적, 물적,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### 제3장 교육여건

**제5조(교원확보)** ①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맞추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육자적 자질 및 인격을 고르게 갖춘 전임교수를 적정 정도 이상 확보한다.

② 교원의 임용은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.

**제6조(시설설비 확보)** ①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을 위한 강의실, 실험실습실, 교수연구실, 체육장 등의 교육 기본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사용이 원활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한다.

②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한다.

③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·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.

④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축한다.

**제7조(기타시설 확보)** ①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시설, 연구지원시설, 후생복지시설, 특수시설 및 기타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·개선한다.

② 도서관은 학문연구 및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장서 확대와 정보 제공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체계화된 설비와 기능화된 공간을 구비한다. <개정 2011.4.25>

## 제4장 학사관리

**제8조(학생선발)** ① 교육이념과 대학장기발전계획에서 설정한 학교 특성화의 방향을 반영한 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학생을 타당한 방법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②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.

③ 다양하고 변별력 있는 학생선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·운영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.

**제9조(학생정원 관리)** ① 학생정원은 사회의 인력 수급 전망, 교육기회의 균등화,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수환경 출신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편입학, 전과, 재입학 등에 관하여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.

**제10조(학기제도)** ① 학기는 연 2학기제로 운영하며,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한다.

② 학점은행제, 시간제등록제,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다. <개정 2020.9.1.>

③ 사회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기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.

**제11조(대학간 학술교류)** 본교는 국내·외 대학과 학술발표회, 공동연구, 교수교류, 학점교류, 학생교류, 학술정보교류 등 각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## 제5장 대학운영

### 제1절 인사관리

**제12조(교직원의 채용기준)** ① 교원은 해당분야의 전공자로 연구실적, 학술활동 및 교육경력,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.

② 국내·외 석학과 산업체의 전문가 등을 석좌교수, 명예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 등 특별임용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대학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.

**제13조(교직원의 채용절차)** 교직원의 채용은 그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.

**제14조(교직원 평가)** ①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
②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
**제15조(교직원의 능력향상)** ① 본교는 교수의 학문발전과 교수방법개발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② 본교는 직원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2절 재정

**제16조(재정확보방안)**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장·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다.

**제17조(발전기금 모금)** 대학장기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을 확보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**제18조(예산편성 및 집행)** ① 대학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·운영하며, 예산·회계제도와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,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.

**제19조(재정공개)** 본교는 재정공개원칙을 준수하며, 예·결산회계 결과는 종료된 직후 언론매체에 공고한다.

**제20조(수익사업의 시행)** 본교는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21조(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)** ① 법인은 대학의 발전과 건실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②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·관리한다.

③ 법인은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.

## 제6장 후생복지

**제22조(학생장학금)** ① 본교는 성적우수학생과 모범학생 등에게 적정수준의 학비를 감면하고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본교는 정부기관, 기업, 동창회,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각종 교외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**제23조(학생자치기구의 지원)** 본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-지도와 시설-설비확충 및 예산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4조(학생기숙사)** 본교는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갖춘다.

**제25조(교직원 복지)** ① 본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.

② 본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.

**제26조(학생진로 지도 및 취업대책)** 본교는 학생들의 성숙한 인격형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면학과 진로 및 취업 등 학생생활의 전반을 상담·지도한다.

## 제7장 사회봉사 및 산·학·연 협동

**제27조(사회봉사)** ① 본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를 시행한다.

② 본교는 사회교육 등 사회봉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개발·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**제28조(산·학·연 협동)** 본교는 사회현장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,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다.

## 제8장 대학장기발전계획

**제29조(발전계획수립)** 대학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에 관한 대학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, 학내외의 유동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. <개정 2017.12.23.>

## 제 9 장 보 칙

**제30조(대학헌장의 보완)** 본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학헌장을 보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헌장은 2004년 8월 26일 공포한다.

부 칙

이 헌장은 2011년 4월 25일 공포한다.

부 칙

이 헌장은 2017년 12월 23일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헌장은 2020년 9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헌장은 2021년 4월 30일 시행한다.